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회)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신원식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방시설본부 대규모 개편('11년) 이후 추가 부여된 임무의 법적 근거 마련과 실제 수행 중인 핵심업무의 부대령 반영, 과다 부여된 임무를 실제 업무수행 범위로 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령안임.

3. 주요내용

가. 국방시설본부 개편 시('11년) 각 군의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이관받아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실시 중인 군 시설물 안전점검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부대령에 관련내용 추가 필요

나. 실제 수행 중이나 국방시설본부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핵심기능을 부대령에 추가 필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업무,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업무 등)

다. 과다 부여된 임무를 현 업무범위에 부합하게 조정 필요

(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은 업무 범위가 과다하여, 실제 수행 중인 범위로 축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시설본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집행**”을 “**집행 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관리**”로, “**시설의 이전사업과**”를 “**시설공사의 집행 및**”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이전관련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
3.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따른 현물대한민국지원 건설사업의 집행
4.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과 군이 사용하는 사·공유지에 관한 업무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시행
6.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대외 협력업무
7. 군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시행
8. 방호시설(방폭, 방탄, 화생방, EMP 등) 성능평가 및 기술지원

9. 그 밖에 국방 시설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이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설치) <u>군 시설공사의 집행</u> 에 관한 업무, 주한미군(駐韓美軍) <u>시설의 이전사업과</u> 주한미군에게 공여(供與)된 재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시설본부를 둔다.	제1조(설치) ----- <u>집행</u> <u>및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 관리---</u> <u>시설공사의 집행 및</u> ----- ----- -----.
제2조(임무) 국방시설본부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조(임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주한미군 시설 및 구역의 조정, 이전에 관한 계획의 수립,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와 주한미군과의 실무 협상</u>	2. <u>주한미군에 대한 재산의 공여·반환·이전관련 주한미군 및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u>
3. <u>주한미군에게 공여된 재산의 관리와 주한미군 관련 시설공사의 집행</u>	3.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의 이행약정」에 따른 현물대한민국지원건설사업의 집행
<신 설>	4. <u>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재산은 제외한다.)과 군이 사용하는 사·공유지에 관한 업무</u>
<신 설>	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

<u><신 설></u>	<u>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 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및 준공검사 시행</u>
<u><신 설></u>	6. <u>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군사 시설 이전사업 추진 및 관리 를 위한 대외 협력 업무</u>
<u><신 설></u>	7. <u>군 시설물 안전진단 및 안전 점검 시행</u>
<u><신 설></u>	8. <u>방호시설(방폭, 방탄, 화생방, EMP 등) 성능평가 및 기술지 원</u>
<u><신 설></u>	9. <u>그 밖에 국방 시설 분야 업무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의 이행</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연 락 처	(02) 748-6577